정관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규약

2022. 4. 26.

SJ 충주산림조합

조합정관(예)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규약

1. 개정이유

조합 임원선거에 등록하거나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당 조합의 다른 선거(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)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하여 선거의 효율성을 제고하고, 대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하는 등 선거제도를 합리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조합 임원선거에 등록하거나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 해당 조합의 다른 선거(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)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함(안 제4조의2 신설)

나. 대의원이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대의원직을 사직하도록 함 (안 제8조제1항)

다. 후보자의 순서를 추첨을 통해 정하도록 함(안 제60조제5항 및 제90조제2항)

조합정관(예)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개정규약

조합정관(예)부속서임원선거규약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2(이중등록의 제한) 이 규약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(이 규약에 따른 임원선거 및 지역조합대의원선거규정(예)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)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
제8조제1항 중 "비상임감사"를 "비상임감사, 대의원"으로 한다.

제60조제5항 중 "성명의 가, 나, 다 순으로 한다"를 "추첨으로 결정한다"로 한다.

제90조제2항 중 "성명의 가, 나, 다 순으로 한다"를 "추첨으로 결정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한다.

⑥ 선출인이 1명인 경우 단기명으로, 2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단기명 또는 연기명을 정하여 선출한다.

제92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.

①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
②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
제9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“보궐선거”를 각각 “보궐선거 및 재선거”로 한다.

제96조 전단 중 “제45조”를 “제43조제2항, 제45조”로 한다.

부칙 <2022.03.10. 산림청장 인가>

이 규약은 202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4조의2(이중등록의 제한) 이 규약에 따라 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 및 추천된 사람은 해당 선거의 선거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이 조합의 다른 선거(이 규약에 따른 임원선거 및 지역조합대의원선거 규정(예)에 따른 대의원선거를 포함한다)의 후보자가 될 수 없다.
제8조(피선거권의 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 조합의 조합장후보자가 될 수 없다. 1.·2. (생 략) 3. 조합장 후보자등록신청 전일까지 본 조합의 비상임이사, 비상임감사 및 본 조합 자회사의 비상임임원의 직을 사직하지 아니한 사람 4. (생 략) ② (생 략)	제8조(피선거권의 제한) ① ----------. 1.·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----- 비상임감사, 대의원 ---------- 4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
제60조(선거공보) ① ~ ④ (생 략) ⑤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서는 성명의 가, 나, 다 순으로 한다. ⑥ ~ ⑪ (생 략)	제60조(선거공보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----- 추첨으로 결정한다. ⑥ ~ ⑪ (현행과 같음)

현 행	개 정 안
제90조(투표) ① (생 략)	제90조(투표) ① (현행과 같음)
② 투표용지의 후보자 배열순서는 성명의 가, 나, 다 순으로 한다.	② ---------- 추첨으로 결정한다.
③·④ (생 략)	③·④ (현행과 같음)
⑤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중 선출하여야 할 이사·감사별 정수이내의 난에 기표("ⓧ"표)하여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.	⑤ 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따라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로 기표한다.
<신 설>	⑥ 선출인이 1명인 경우 단기명으로, 2명 이상인 경우 이사회에서 단기명 또는 연기명을 정하여 선출한다.
⑥ (생 략)	⑦ (현행 제6항과 같음)
제92조(당선인의 결정) ① 당선인의 결정은 선거인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수의 과반수의 득표자로 한다. 다만, 연기명제 투표에 있어서 과반수 득표자가 선출하여야 할 인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수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.	제92조(당선인의 결정) ① 후보자중 유효투표의 최다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당선인이 없는 경우에는 최다수득표자가 1명이면 최다수득표자와 차순위득표자(최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다수득표자)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	②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여 그 중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.

현 행	개 정 안
으로 한다.	
③ 연기명제 투표에 있어서 제2항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게 되는 경우 피선거 후보자의 수는 선출하여야 할 인원에 득표순위에 따라 1명을 가산한 수로 하되 그 1명에 해당하는 동점 득표자수가 다수인 경우는 동점득표자 전원을 가산한 수로 한다.	<삭 제>
④ (생 략)	③ (현행 제4항과 같음)
제94조(보궐선거) ① 이사·감사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기간 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.	제94조(보궐선거 및 재선거) ① ---------- 보궐선거 및 재선거 ---------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96조(준용규정) 제6조제1항,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, 제12조부터 제13조까지,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,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, 제45조, 제55조, 제57조부터 제70조까지, 제73조부터 제74조까지,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, 제83조의 규정은 이사·감사선거에 준용한다. 이 경우 제12조제3항 및 제13조의 "관할위원회"를 "조합선거관리위원회"로, 제28조제5항 및 제4	제96조(준용규정) ---------- 제43조제2항, 제45조, ----------

현 행	개 정 안
5조의 “조합장”을 “이사·감사”로, 제76조의 “대의원회”를 “총회 또는 대의원회”로, 제89조에 따라 조합장이 선거관리업무를 행하는 경우에는 “조합선거관리위원회”·“위원장”을 “조합장”으로 한다.	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 ----------.